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년 9월 11일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9월 1일, 포항시장

2)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
3) 상정일자
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서양진 시립도서관장)

1) 제안이유

❍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항 번호와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가. 도서관의 정의 인용 조항 수정(안 제2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)

- (제1호)작은도서관 정의: 법 제2조제4호가목 ⇒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
- (제3호)사립 작은도서관 정의: 법 제31조 ⇒ 법 제36조
- (제4호)도서관자료 정의: 법 제2조제2호 ⇒ 법 제3조제2호

나. 시설 및 자료기준 인용 조항 수정(안 제5조제2항)

- 시설 및 자료 비치 기준: 시행령 제3조제1항 ⇒ 시행령 제33조제2항

다.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인용 조항 수정(안 제12조)

-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 기준: 시행령 제3조제2항
 ⇒ 시행령 제33조제3항

라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문장 정비

3) 관계법령

○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경희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조항 근거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작은도서관의 경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이용객이 극히 저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,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